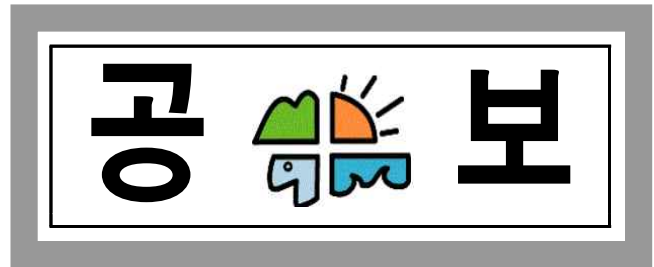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1491호 2023년 9월 22일(금)

조 례

-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3
- 속초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5
- 속초시어업인지원센터설치조례 폐지조례 8

고 시

- 속초 도시관리계획(동명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9

공 고

-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 12
- 2023년 빈집정비 지원사업 추가 공고 13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2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3041호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2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조례 제3042호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6월 30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으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속초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2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3043호

속초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사람(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 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 유형별, 성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4.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속초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주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8조(교육) ① 시장은 시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홍보) ① 시장은 시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홍보물을 시 SNS에 게시하거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속초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속초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어업인지원센터설치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9월 22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조례 제3044호

속초시어업인지원센터설치조례 폐지조례

속초시어업인지원센터설치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 도시관리계획(동명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속초시 고시 제2023-132(2023. 9. 18.)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된 도시관리계획(동명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미래전략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9월 19일
속 초 시 장

1.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40	동명3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361-1번지 일원	7,537	증) 32	7,569	-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결 정 사 유
변경	40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361-1번지 일원	7,569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오차정정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함.

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용도지역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7,537	증) 32	7,569	100.0	
일반상업지역	7,537	증) 32	7,569	100.0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 교통시설(도로) 총괄표

■ 기정

구분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계	1	340	8,500	-	-	-	-	-	-	1	340	8,500
대로	1	340	8,500	-	-	-	-	-	-	1	340	8,500

■ 변경

구분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계	1	340 (37.4)	8,907	-	-	-	-	-	-	1	340 (37.4)	8,907
대로	1	340 (37.4)	8,907	-	-	-	-	-	-	1	340 (37.4)	8,907

※()는 구역내 연장.

■ 교통시설(도로) 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2	25 ~ 29.5	주간선 도로	340	동명 450-1도	동명 259-3도	일반 도로		1974. 8. 14 (건고 제272호)	
변경	대로	3	2	25 ~ 29.5	주간선 도로	340 (37.4)	동명 450-1도	동명 259-3도	일반 도로		1974. 8. 14 (건고 제272호)	

■ 교통시설(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2	대로3-2	◦면적변경 - 8,500m ² → 8,907m ² (증 407m ²)	◦ 토지분할 및 면적기재 정정에 따른 변경

■ 공간시설(교통광장) 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7	광장	교통광장	동명동 81-1도 일원	3,248.0	-	3,248.0	1986.6.3. (건고제238호)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가구 번호	획지 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1	40	BL1	A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361-1번지 일원	7,258	감) 164	7,094	공동주택
			B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81-1번지 일원	279	증) 196	475	공공시설
					7,537	증) 32	7,569	

※ 공공시설은 도시계획도로 및 교통광장으로 기부채납 예정임.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면표시 번 호	위치 (획지번호)	구 분	결 정 내 용
40	동명동 361-1번지 일원 (A)	용도	허용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 허용용도 외의 용도
		건 폐 율	◦ 80% 이하
		용 적 률	◦ 900% 이하
		높 이	◦ 43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6M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면표시 번 호	위치 (획지번호)	계 획 내 용	비 고
40	동명동 361-1번지 일원 (A)	◦ 단지내 조정 - 「건축법」 및 「속초시 건축조례」 등 관련법령에 의한 설치기준 이상 조성	
		◦ 차량진출입허용구간 - 교통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구간을 지정하여 차량 진출입구 설치 - 차량진출입허용구간으로 결정된 부분 외에는 차량진출입 불허	
		◦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법」 및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설치기준 이상의 주차장 확보	

2.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도면 : 실음생략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

속초시 공고 제2023-913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2일

속 초 시 장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속초시장(문화체육과)		
	대표자 (성명)	속초시장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소하천명		신흥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설악동 산42-1		
	면적	영구: 30.6㎡ 임시: 123.5㎡(허가일~2023년 12월)		
	기간	2023. 9. 14.~영구		
	목적 및 사유	상수관로 매설(신흥사 극락보전 재난방지시설 소방용수관로 인입공사)		

2023년 빈집정비 지원사업 추가 공고

관내 1년 이상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범죄·붕괴·화재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하여 철거비를 지원하는 2023년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8일

속 초 시 장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유주차장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빈집

○ 지원금액

- 철거(활용) : 1동당 철거비의 100%(최대 10백만원 지원)
※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유주차장 등)로 제공하는 소유자
- 철거(단순) : 1동당 철거비의 80%(최대 4백만원 지원)

- 지원내용 :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소유자 빈집을 자진철거 하고자 하는 경우 철거비 지원

□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서류

- 빈집정비 지원사업 신청서

- 소유권 증빙서류

· 건축물의 실소유자(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대장)

·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건물의 상속자에 한하여 신청가능(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빈집현황 사진

○ 접수장소 : 속초시청 건축과 건축정책팀(종합민원실 2층)

○ 접수방법 : 접수장소에 방문 접수

○ 선정기준

1순위	빈집실태조사 용역에 따른 4등급(철거대상) 빈집
2순위	악취발생 및 주변 미관이 저해되고 민원소지가 많은 빈집
3순위	환경 유해성이 있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대상 빈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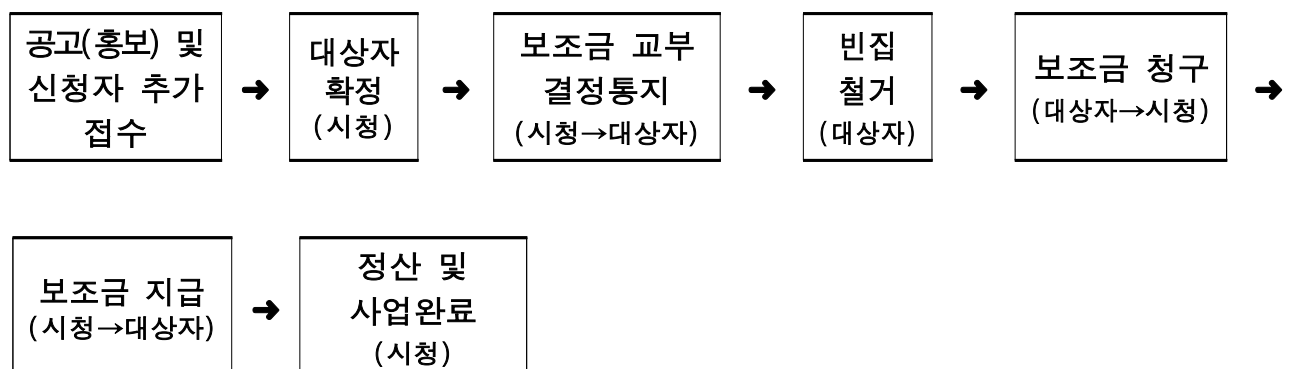
※ 동일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현장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속초시에서 우선순위 대상자 선정하며, 근저당 등 채권설정 물건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사업선정 이후 1개월 이내에 보조금 교부신청이 없는 경우 선정 취소되며, 교부 결정 이후 2개월 이내에 사업진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 제외대상부지 : 주택건설사업, 대형건축물, 주택재개발 부지 등

※ 당해연도 사업예산 소진시 차기년도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하여 사업추진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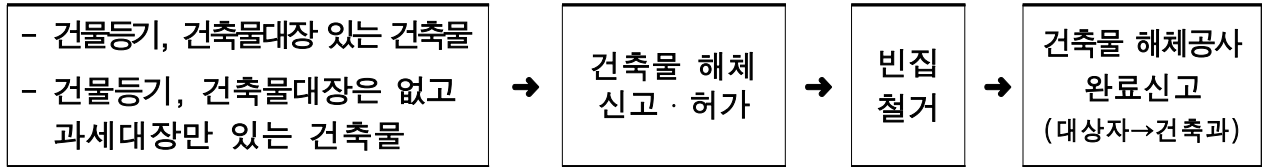


□ 세부추진절차

추진단계	제출서류 및 주의사항	비고
공고(홍보) 및 신청자 추가 접수 (대상자)	- 빈집정비 지원사업 신청서[별지1] - 소유권 증빙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 빈집현황사진[별지2]	
대상자 확정 (시청 건축과)	- 빈집정비 보조사업 신청서[별지3] ※ 철거계약서, 철거견적서, 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 첨부 - 보조사업 실행계획서[별지4] - 확인서[별지5] ※ 인감증명서 첨부 - 빈집정비 보조사업 청렴 이행계약서[별지6]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 (시청 → 대상자)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신고(허가) 관련 서류 ※ 건축물해체신고서, 위임장, 해체계획서, 검토확인서(건축사), 석면조사 보고서, 건설업등록증, 기술인 경력증명서, 도급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첨부 ※ 해체허가시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빈집철거 (대상자)	- 철거 전 · 중 · 후 사진촬영[별지7] ※ 주변 도로 또는 지형지물이 나타나게, 중장비 투입 철거 시 확인할 수 있게, 철거 위치에 건축폐기물 등 잔해가 없도록 깨끗하게 정리한 후 촬영 - 석면슬레이트 등 지정폐기물 적법처리(폐기물 처리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처리) ※ 빈집 철거부지에 있는 건축물 기초 및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경우 정화조까지 모두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 유지 ※ 슬레이트 등 각종 건설폐기물 처리 완료 ※ 장비비, 인건비, 폐기물 처리비 등 지출을 증빙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반드시 제출	
보조금 청구 (대상자 → 시청)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공사 완료신고 관련 서류 ※ 건축물 해체신고 완료보고서, 건설폐기물필증, 사진대지 등 ※ 해체허가의 경우 감리완료보고서 첨부 - 빈집정비사업 완료보고[별지8] - 사업비 집행내역서[별지9] - 보조금 청구서[별지10] ※ 지출증빙 서류 : 통장사본, 철거비 지급내역서, 철거 견적서, 철거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건설폐기물 처리 내역서, 철거업체 건강 · 연금 보험료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첨부 ※ 지출증빙 미 첨부 시 보조금 지급 불가하며, 지출액이 교부결정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지출액만 보조	
보조금 지급 (시청 → 대상자)	※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집행내역서,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증빙 내역을 비교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보조금 지급	
정산 검사 및 사업완료 (시청)		

□ 빈집 철거 시 이행하여야 할 행정절차

- 건축물 해체신고·허가 관련(문의 : 건축과 건축정책팀 ☎033-639-1513)



※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건설폐기물 및 석면함유(슬레이트 등) 해체 관련(문의 : 친환경정책과 생활환경팀 ☎033-639-2337)
- 빈집철거 공사 중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5톤 이상 배출 시 친환경정책과에 신고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 석면함유 제품 해체·제거 작업은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석면 해체·제거업체가 실시하여야 함.

□ 유의사항

- 빈집철거의 기준은 철거부지에 있는 건축물 기초 및 재래식화장실이 있는 경우 정화조까지 모두 철거한 후 각종 건설폐기물을 처리 완료한 상태여야 함.
 - 보조금 청구 시 보조금을 지급받는 통장은 해당 사업 신청자와 일치하는 예금주여야 하며, 계좌에서 철거전문업체 계좌로 보조금이 지급된 내역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 지급 청구 시 구비서류 및 지출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보조사업비 정산액(지출 증빙 금액)이 보조금 교부 결정 사업비보다 감소하는 경우에는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교부방법)에 따라 보조금이 감액되어 지출액만 보조됨.
- ☞ 상기 유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별지 1 ~ 9] 각 1부. 끝.

【서식 1】

2023년도 빈집정비사업 신청서

신청자 현황 (건축물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연락처)		
	가구유형	☐ 수급 ☐ 차상위계층 ☐ 일반		
철거 대상 건축물 현황	위 치			
	규모(㎡)		지붕 형태	☐ 슬레이트지붕 ☐ 일반지붕
	용 도		구 조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 등재 ☐ 미등재		
	빈집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속초시(건축과)에서 작성		
철거 예정일	2023년 월 일 ~ 2023년 월 일			
본인은 위와 같이 빈집을 철거할 것을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 . . 신청인 (인장 또는 서명) 속초시장 귀하				

【서식 2】

빈집 현황 사진

☐ 빈 집 위 치 : 속초시

☐ 사업대상자 :

원 경 사 진

근 경 사 진

【서식 3】

빈집정비 보조사업 신청서

보조사업자	대 표 자		
주 소	☎		
보조사업명	2023년 빈집정비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보조사업비	총사업비	시 비	자 부 담
(단위 : 원)			
보조사업기간	2023. . . ~ 2023. . . (개월간)		
사 업 계 획	“별 첨”		
사업위치 및 규모	위치 : 속초시 동 번지 규모 : 지하 층/ 지상 층, 구조, m ²		
위와같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 합니다. 2023. . . 신청자 성명 : (인) 속 초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철거 견적서 1부. 3. 철거 계약서 1부.		

【서식 4】

보조사업 실행계획서

1. 사업명 : 2023년 빈집정비 지원사업

2. 사업개요

- 기간 : 2023. . . ~ 2023. . .
- 위치 : 속초시 동 번지
- 사업대상 :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 사업내용 : 지하 층 / 지상 층, 구조, m²

3. 일정별 세부추진계획

일 정	주 요 내 용	세부추진내용
월 일		
월 일		
월 일		

4. 보조금 신청내역

- 총사업비 :
- 사업비 사용방법 : 자부담으로 건축물 철거 후 보조금 청구
-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계(A+B)	보조금신청액(A)	자부담(B)
빈집철거 1식			

【서식 5】

확 약 서

1. 신청사업 : 2023년도 빈집정비 지원사업

2. 확인내용

본인은 2023년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강원도
속초시 ()소재 건축물이 현재까지
본인 소유이며, 문제발생시 민·형사상 발생하는 모든 손해배상책임
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3 . . .

☐ 건축물 소유자(확약자)

- 성 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주 소:

붙임 인감증명서 1부.

속초시장 귀하

빈집정비 보조사업 청첩 이행계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속초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하겠으며, 속초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속초시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39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3. . .

보조사업자 성명 (서명)

【서식 7】

사 진 대 장

- 위 치: 속초시
- 사업대상자:

철 거 전	
철 거 중	
철 거 후	

【서식 8】

빈집정비사업 완료보고

1. 사 업 명 : 2023년 빈집정비 보조사업

2. 사 업 량 :

3. 사업위치 :

4. 총사업비 :

(단위 : 원)

사업량 (세부사업명)	사업비			비 고
	계	시비	자부담	

5.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상기 사업계획과 같이 빈집정비(철거)사업을 완료 하였기에 보조금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 .

제 출 자 : (인)

속 초 시 장 귀하

【서식 9】

사업비 집행내역서

☐ 사업비 집행현황(당초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대비 작성)

(단위 : 원)

구분 항목	보조금 신청시(A)			정산시 집행액(B)			잔 액(A-B)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원)

지 출 내 역			집 행 구 분
지출일자	항목 및 산출내역	지출액	
계			
2023. . .			
2023. . .			

☐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내역(잔액 발생시)

○

○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등 기재

보조금 청구서

1. 청구금액 : 금 원정(금 원정)
2. 청 구 인 : ()
3. 계좌번호 : (은행명 :)

상기 금액을 2023년도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사업 민간보조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2023. . .

신청자 성명 : (인)

속 초 시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통장사본 1부.
2. 철거비 지급내역서 1부.
2. 철거 견적서 및 철거 계약서1부.
3. 전자세금계산서 1부.
4. 건설폐기물 처리 내역서 1부.
5. 철거 업체 건강·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6.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